

심 사 보 고 서

[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]

1996. 2. 8

총 무 위 원 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일 자 : 1996. 2. 2

나. 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다. 회 부 일 자 : 1996. 2. 5

라. 상 정 일 자 : 1996. 2. 8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상호)

가. 제안이유

- 조직의 안정성,능률성,탄력성을 도모하여 원활한 시정업무의 추진 및 업무의 균형유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구,정원이 재조정에따른 서산시 대산출장소 기구의 일부 폐지 및 재조정에 따라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종전 대산출장소 4개계중 2개계 존속(명칭변경) 및 2개계 폐지에 따라 대산출장소 업무중 "지역개발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" "관광지 및 문화재의 보호관리" "쓰레기 처리대책"을 삭제 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·군통합에 따라 '99.12.31까지 한시적으로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를
-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구의 일부폐지 및 업무를 조정하게 됨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개정하여도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됨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었음

5. 토 론

- 생략

6. 소수의견

- 없었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대로 가결

제안번호	제 61 호
의결년월일	1996. . . (제 호)

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(안)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6. 2.2

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6.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1. 제 안 이 유

- 조직의 안정성·능률성·탄력성을 도모하여 원활한 시정업무의 추진 및 업무의 균형유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구·정원의 재조정에 따른 서산시 대산출장소 기구의 일부 폐지 및 재 조정에 따라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를 현실에 부합 되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- 종전 대산출장소 4개계중 2개계 존속(명칭변경) 및 2개계 폐지에 따라 대산출장소 업무중 "지역개발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" "관광지 및 문화재의 보호 관리" "쓰레기 처리 대책" 을 삭제 (안 제3조)

3. 참 고 사 항

- 지방자치법 제106조

서산시 조례 제 호

서산시 대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 대산출장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“제4호 내지 제6호”를 삭제하고, “제7호”를 “제4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업무) 출장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p>1.~ 3.(생략)</p> <p><u>4. 지역개발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5. 관광지 및 문화재의 보호 관리</u></p> <p><u>6. 쓰레기 처리 대책</u></p> <p><u>7. (생략)</u></p>	<p>제3조(업무)</p> <p>...</p> <p>1.~ 3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(삭제)</u></p> <p><u>(삭제)</u></p> <p><u>(삭제)</u></p> <p><u>4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u></p>